



No. 2022-53
품목 딸기 콜라겐(Strawberry Collagen)
HS CODE 2007.99
국가 필리핀(Philippines)



C.O.N.T.E.N.T.S

I	시장 현황 및 전망	3
	1. 시장 규모 및 현황 2. 수출입 통계	
II	트렌드	10
	1. 소비 트렌드 2. 빅데이터 분석	
III	유통	16
	1. 유통구조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IV	통관 및 제도	22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라벨링 4. 위생요건	
V	시사점	40
	1. 수출 확대 방안	

I

시장 현황 및 전망



01 시장 규모 및 현황

필리핀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시장 규모

강화 및 기능성 식품(Fortified and Functional Foods)은 식품에 영양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분 및 영양분을 첨가한 제품임. 지원 기업의 딸기 콜라겐 제품은 콜라겐에 딸기를 첨가한 것으로, 강화 및 기능성 식품군에 해당함

필리핀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26억 1,890만 달러(약 3조 4,543억 원)를 기록함. 향후 2026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하여 33억 8,120만 달러(약 4조 4,598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2016-2026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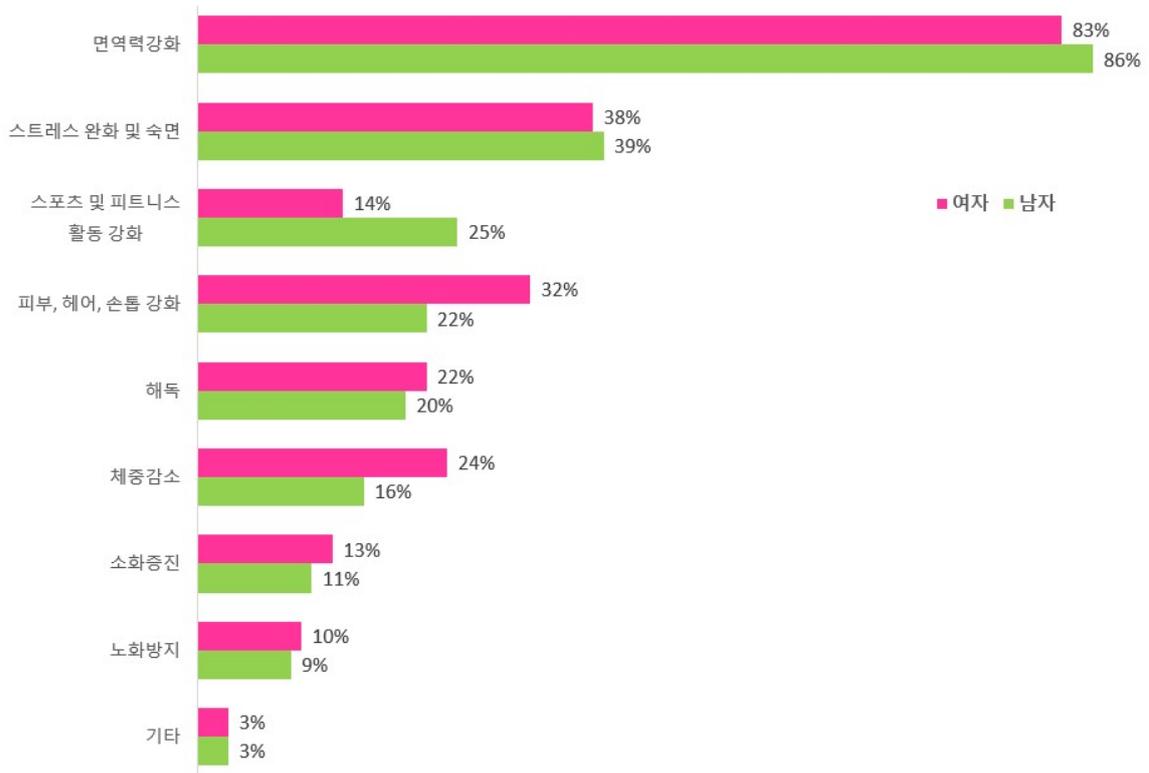
필리핀의 16세 이상 소비자 6,7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86%, 여성의 83%가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였으며, 피부, 헤어 및 손톱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은 남성이 22%, 여성이 32%를 기록함



그림 2

건강기능식품 섭취 목적(2020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수출입 통계

HS Code 및 관세율 정보

HS CODE 2007.99

한국 HS CODE 2007은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로 정의하고, 2007.99는 '기타'로 규정함

이에 해당하는 필리핀의 HS CODE는 2007.99임



표 1

HS CODE 관세율

국가명	HS CODE	품명	관세율
한국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2007.99	기타	-
필리핀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2007.99	기타	-

글로벌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딸기 콜라겐(HS CODE 2007.99) 수입 규모는 28억 3,777만 8,000달러를 기록함

- 2018년 전년 대비 6.9% 성장하였지만, 2019년 6.6% 감소하고, 2020년 5.6%, 2021년 13.6% 증가하여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4.6%를 기록함

수입 규모 1위는 미국으로, 2021년 4억 2,589만 5,000달러로 전체의 15.0%를 차지함

- 필리핀은 43위로, 1,146만 6,000달러를 수입하여 전체의 0.4%를 차지함

 표 2 글로벌 딸기 콜라겐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2,369,217	2,531,880	2,364,753	2,497,313	2,837,778	4.6
1 미국	267,538	303,941	323,697	383,415	425,895	12.3
2 독일	222,442	237,006	217,159	243,698	265,325	4.5
3 프랑스	182,904	195,750	172,576	183,047	198,031	2.0
4 캐나다	86,857	91,962	99,784	123,231	148,853	14.4
43 필리핀	12,367	8,100	12,925	12,474	11,466	-1.9
기타	1,597,109	1,695,121	1,538,612	1,551,448	1,788,208	2.9

자료: ITC

 그림 3 글로벌 딸기 콜라겐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자료: ITC

필리핀 수입 규모

2021년 필리핀의 딸기 콜라겐(HS CODE 2007.99) 수입 규모는 1,146만 6,000달러를 기록함

- 2018년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지만, 2019년 59.6% 증가하고, 2020년 3.5%, 2021년 8.1% 감소함

2021년 기준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對중국 수입액은 399만 달러로 전체의 34.8%를 차지함

- 對한국 수입 규모는 17만 4,000달러로 전체 수입 규모의 1.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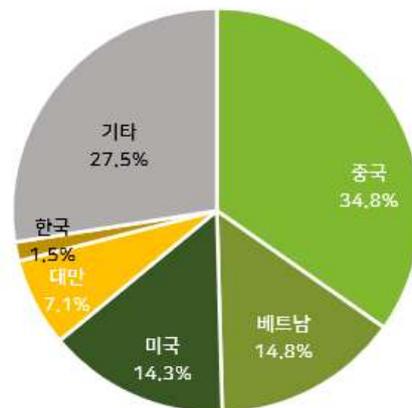
 표 4 필리핀 딸기 콜라겐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성장률
글로벌	12,367	8,100	12,925	12,474	11,466	-1.9
1 중국	6,253	1,339	5,907	5,685	3,990	-10.6
2 베트남	1,894	1,571	1,756	1,424	1,695	-2.7
3 미국	1,116	1,228	1,495	1,432	1,645	10.2
4 대만	274	693	1,367	954	811	31.2
9 한국	59	104	178	166	174	31.0
기타	2,771	3,165	2,222	2,813	3,151	3.3

자료: ITC

 그림 5 필리핀 딸기 콜라겐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자료: ITC

한국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對글로벌 딸기 콜라겐(HS CODE 2007.99) 수출 규모는 336만 3,000달러를 기록함

- 2018년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2019년 25.4% 증가, 2020년 37.8% 감소, 2021년 21.5% 증가함

2021년 對필리핀 수출 규모는 8만 1,000달러로 전체의 2.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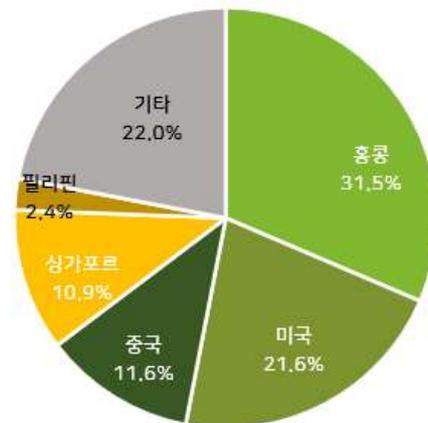
표 6 한국 딸기 콜라겐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성장률
글로벌	4,042	3,548	4,450	2,769	3,363	-4.5
1 홍콩	1,767	1,439	1,197	974	1,058	-12.0
2 미국	430	302	656	199	726	14.0
3 중국	467	938	1,580	548	391	-4.3
4 싱가포르	30	33	42	100	368	87.1
9 필리핀	96	126	103	109	81	-4.2
기타	1,252	710	872	839	739	-12.3

자료: ITC

그림 7 한국 딸기 콜라겐 국가별 수출 비중(2021년)



자료: ITC

II

트렌드



01 소비 트렌드

콜라겐 및 미용 관련 제품 트렌드

필리핀은 국민 소득이 비교적 낮아, 사세(Sachet Economy) 형태의 제품을 선호함. 사세는 1회분의 제품이 포장된 봉지를 일컫는 말로, 필리핀에서는 편의점이나 지역 내 소규모 점포 등에서 편의품을 비롯하여 기호품과 라면, 비스킷 등의 식료품까지 소량 포장하여 판매되고 있음

필리핀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이 낮아 한 번에 많은 돈을 주고 용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지출 부담이 적은 소용량의 사세 제품을 자주 구매하며, 소용량 제품이 대용량 제품보다 가격이 더 저렴함. 필리핀 소비자들은 물건에 따라 대용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할지라도 소용량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시장 진입에 더 용이함



그림 1

필리핀 사세 제품 전문 로컬 매장



자료: Bloomberg

필리핀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고,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가 매우 높음. 이에 따라 필리핀 현지 브랜드들도 한국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필리핀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높은 품질은 인정하지만 가격이 높으며, 한국 제품을 모방한 필리핀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함



그림 2

K-뷰티 이미지를 모방하는 필리핀 브랜드 홍보 사진



자료: Chu Chu Beauty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고온 다습한 기온과 마스크 사용 증가로 인해 여드름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스킨 관련 제품 홍보 시 여드름 케어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필리핀 건강식품 시장 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제품은 OTC(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와 비타민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비타민 C와 D가 도움이 된다는 현지 보도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 2021년 비타민 및 식이보조식품 판매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허브 및 전통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또한 합성화합물을 원료로 한 제품보다는 천연성분을 원료로 한 OTC를 선호하는 추세임

필리핀 1인당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함. 특히, 페이스북을 이용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02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개요

필리핀 내 웹 트래픽 수가 높은 라자다에서 딸기 콜라겐 젤리(Strawberry Collagan Jelly)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하였고, 수집 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건수는 제품 9건, 소비자 반응 473건임

데이터 분석

1.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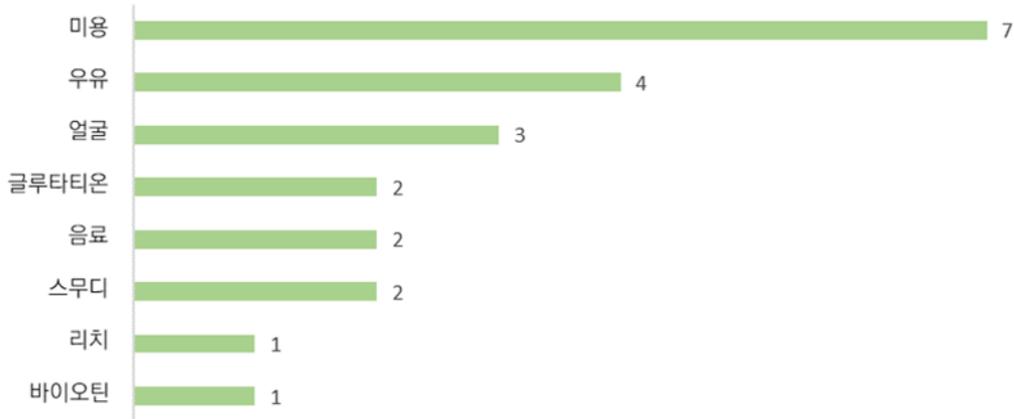
제품과 직접적인 콜라겐과 젤리는 빈도에서 제외하였으며, 미용 7건, 우유 4건, 얼굴 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다른 주요 단어로는 스무디, 음료, 글루타티온, 바이오틴, 리치 순으로 출현함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 중인 콜라겐 제품들은 주로 젤리, 스무디, 음료의 세 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글루타티온, 바이오틴을 보충해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1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순위	출현단어	출현빈도
1	미용	7
2	우유	4
3	얼굴	3
4	스무디	2
5	음료	2
6	글루타티온	2
7	바이오틴	1
8	리치	1

그림 2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2. 동시출현단어 분석

연관단어 출현 빈도는 아래 표와 같음. 제품 소개 시 주요 키워드는 역시 미용, 피부와 관련된 단어들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제품의 다양한 맛과 관련한 단어가 다수 출현함. 제품 소개 시 주요 문구는 크게 두 가지로, “피부 미용에 좋은 콜라겐”, “비타민C와 바이오틴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콜라겐”으로 확인됨

표 3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 빈도

순위	연관단어	특징
1	미용, 우유	11
2	얼굴 미용	8
3	멜론 콜라겐	5
4	커피 콜라겐	4
5	딸기 콜라겐	4
6	리치 콜라겐	4
7	딸기 음료	3
8	비타민 콜라겐	2
9	비타민 바이오틴	2
10	딸기 스무디	2

3. 리뷰 출현 단어 분석

딸기 콜라겐 젤리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리뷰에서는 ONHAND WITH FREEBIES 제품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위 제조사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 멜론, 딸기, 리치 맛 젤리를 판매 중임.이 가운데 멜론 맛이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콜라겐 젤리를 향후 꾸준히 섭취하고 싶다는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분석됨



표 4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순위
1	프리스비 제품	34
2	미용 우유	16
3	멜론 맛	9
4	콜라겐 음료	8
5	콜라겐 스무디	6
6	딸기 맛	5
7	딸기 우유	3
8	계속 사용	3

III

유통



01 유통구조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유통구조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유통채널은 2021년 기준 점포 기반 소매점이 전체의 95.3%를 차지하였으며, 비점포 기반 소매점의 비중은 4.7%를 차지함

특히, 현대식 식료품 소매점의 비중이 전체의 53.5%였으며, 전통적 식료품 소매점이 27.1%를 차지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필리핀은 소규모 로컬 소매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1**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시장 유통채널별 점유율 현황(2016-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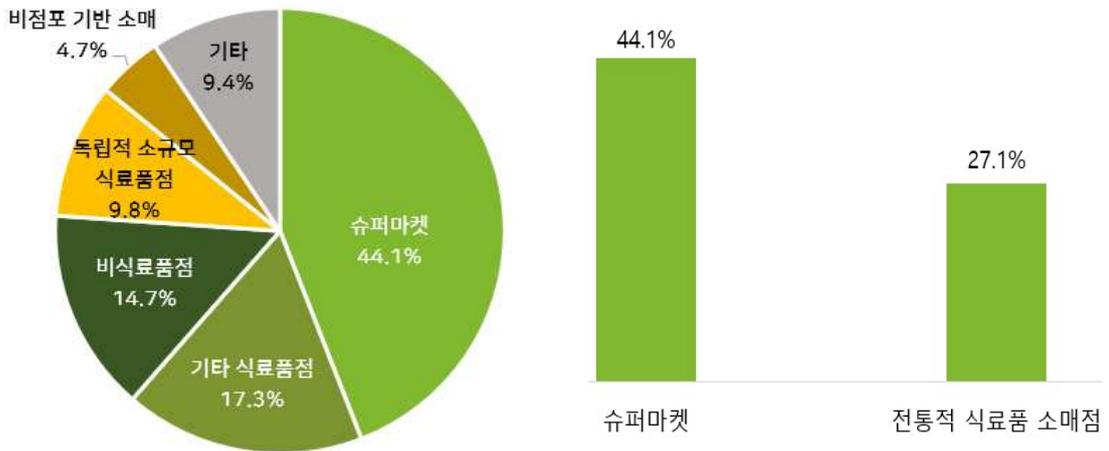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점포 기반 소매점	99.0	98.9	98.9	98.3	96.5	95.3
1) 식료품 소매점	81.1	81.4	81.8	81.8	81.1	80.6
① 현대식 식료품 소매점	52.1	52.2	52.5	52.4	53.0	53.5
- 편의점	1.3	1.3	1.3	1.3	1.0	0.9
- 포코트 소매점 ¹⁾	0.0	0.0	0.0	0.0	0.0	0.0
- 하이퍼마켓	7.7	7.8	7.9	8.0	8.2	8.5
- 슈퍼마켓	43.0	43.0	43.2	43.1	43.7	44.1
② 전통적 식료품 소매점	29.1	29.2	29.3	29.3	28.1	27.1
- 독립적 소규모 식료품점	11.1	11.0	10.9	10.9	10.3	9.8
- 기타 식료품점	18.0	18.2	18.4	18.5	17.8	17.3
2) 비식료품점	17.9	17.6	17.1	16.5	15.4	14.7
비점포 기반 소매	1.0	1.1	1.1	1.7	3.5	4.7
- 직접 판매	1.0	1.1	1.1	1.2	0.9	0.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1) 주유소 및 매장의 입구에 입점한 소규모 판매점

2021년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함. 이어서 기타 식료품점이 17.3%, 비식료품점이 14.7%, 독립적 소규모 식료품점이 9.8%, 비점포 기반 소매점이 4.7%를 차지함

그림 2 강화 및 기능성 식품 시장 주요 유통채널별 점유율(2021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주요 유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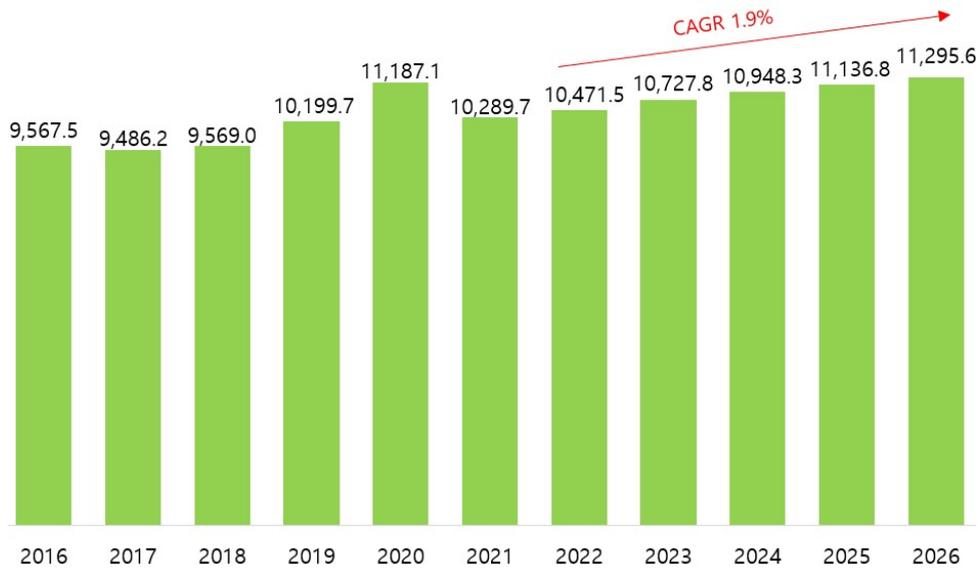
Euromonitor에 따르면, 필리핀의 슈퍼마켓 매출액 규모는 2022년 104억 7,150만 달러(약 13조 8,119억 원)에서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1.9% 성장하여 2026년 112억 9,560만 달러(약 14조 7,915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슈퍼마켓 매출액 규모 및 전망(2016-2026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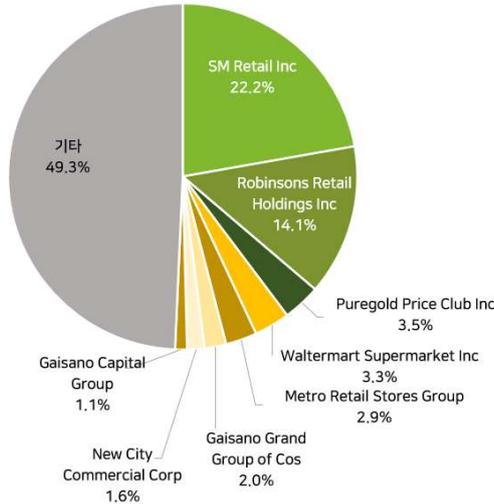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1년 기준 필리핀의 슈퍼마켓 산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SM Retail로, 전체의 22.2%를 차지함

- 이어서 Robinsons Retail이 14.1%, Puregold가 3.5%, Waltermart가 3.3%를 차지함

그림 2 주요 슈퍼마켓 유통채널 점유율(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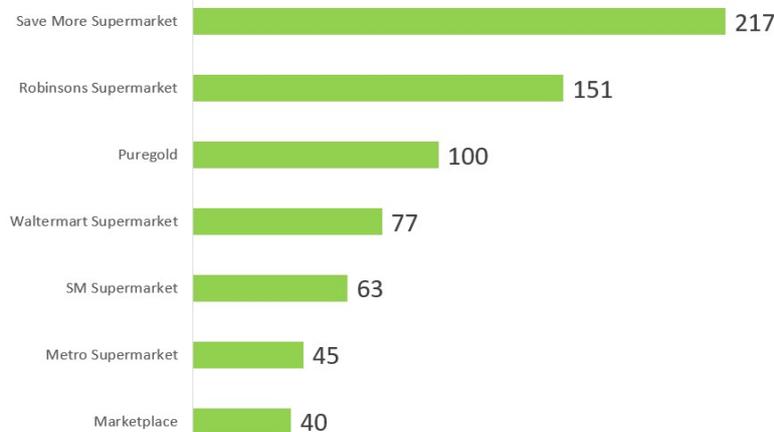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하지만 전통적 식료품 전문점은 소규모 로컬 소매점으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슈퍼마켓 체인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체인은 217개의 점포를 보유한 Save More Supermarket임. 이어서 Robinsons Supermarket이 151개, Puregold가 100개, Waltermart Supermarket이 77개를 보유함

그림 3 주요 슈퍼마켓 체인 점포 수(2021년)



자료: Statista

1. SM RETAIL INC.



- 백화점, 슈퍼마켓 및 전문점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필리핀의 소매업체

기업정보	소재지	SM Retail Headquarters, Building AJ.W. Diokno Boulevard Corner Bayshore Avenue, Pasay City, Manila, 1300 Philippines
	설립 연도	1958년
	직원 수	7,300명(2021년)
	매출액	1,984만 달러(2021년)
	대표전화	+63-288318000
	홈페이지	smmarkets.ph

자료: D&B Hoover's 및 기업 홈페이지

2. ROBINSON'S SUPERMARKET CORPORATION



- Robinsons Retail Holdings Inc.의 자회사로, 2021년 3월 기준으로 6개 사업 부문, 28개 소매 브랜드 및 1,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임

기업정보	소재지	Building 1110 E. Rodriguez Jr. Avenue, Barangay Bagumbayan Quezon, Manila, 1110 Philippines
	설립 연도	1990년
	직원 수	8,000명(2021년)
	매출액	183만 달러(2021년)
	대표전화	+63-283950032
	홈페이지	www.robinsonssupermarket.com.ph

자료: D&B Hoover's 및 기업 홈페이지

3. PUREGOLD PRICE CLUB, INC.



- 필리핀의 슈퍼마켓 및 레스토랑 체인으로, 2021년 기준 277개의 슈퍼마켓을 운영 중임

기업정보	소재지	3rd Floor Tabacalera Building 900 D. Romualdez Street Barangay 664, Zone 71, District V, Paco Manila, Manila, 1007 Philippines
	설립 연도	1998년
	직원 수	8,500명(2021년)
	매출액	29억 8,000만 달러(2021년)
	대표전화	-
	홈페이지	www.puregold.com.ph

자료: D&B Hoover's 및 기업 홈페이지

4. WALTERMART SUPERMARKET, INCORPORATED



- 슈퍼마켓, 백화점, 가전제품, 철물점, 전문점, 웰빙 서비스 및 식품 선택의 다양한 범주를 제공하는 필리핀의 슈퍼마켓 체인

기업정보	소재지	Waltermart Building 8001 A Epifanio Delos Santos Avenue, Veterans Village Quezon, Manila, Philippines
	설립 연도	1994년
	직원 수	1,000명(2021년)
	매출액	4억 5,138만 달러(2021년)
	대표전화	+61-1300 308 833
	홈페이지	www.waltermart.com.ph

자료: D&B Hoover's 및 기업 홈페이지

IV

통관 및 제도



01 통관 및 검역

한국 수출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수입신고 서류 준비

- ① 정식 수출신고:
 -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략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수출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세관 심사

-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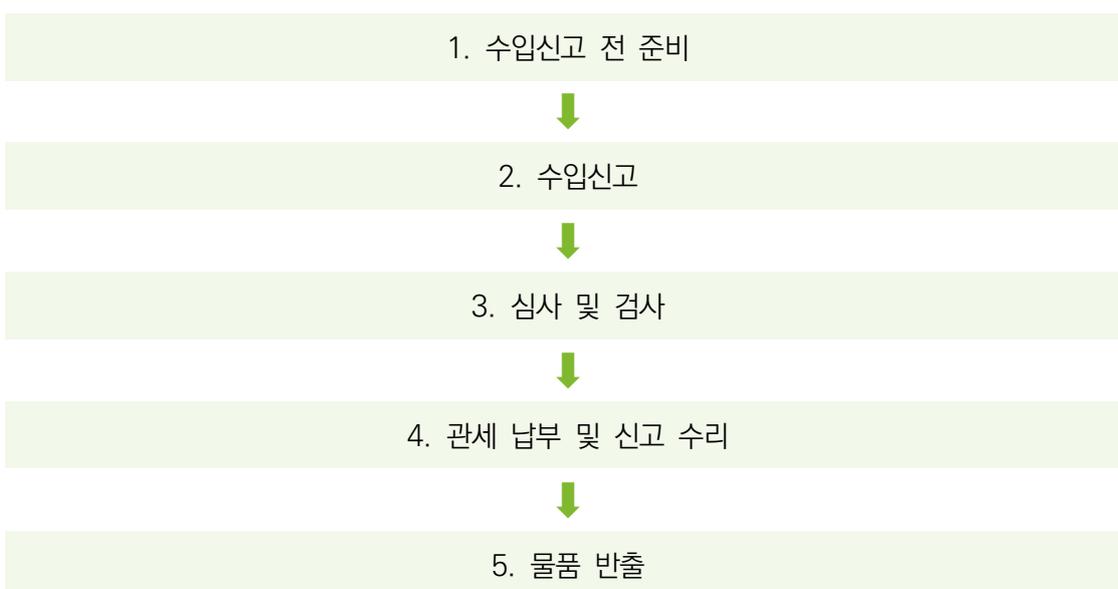
필리핀 통관 절차

개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동식물 위생법 및 식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자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은 수입 불가

- 수출 전 현지 수입업체는 수입면허(CAS)를 취득해야 함
 - 농축산식품 수입 시 위생/검역증명서(SPSIC)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공식품은 사전에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CRP)되어야 함
- 단일통관창구(NSW)를 통해 수입 신고하며 제반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가능
- 정식통관과 약식통관
 - 과세가격 2,000페소 이상 여부 및 개인·상업적 용도 구분에 따라 정식(Form Entry) 및 약식(Inform Entry)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약식통관은 개인 배송에 한하며,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되나 선박 일정 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기간이 길어짐. 또한, 물류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품이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려움

수입 통관 절차도



수입 통관 절차

수입 신고 전 준비

- 1)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확인
 - 수입자는 필리핀산업부(DTI)의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의 수입통관절차 및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금지 품목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필리핀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허가 품목, 수입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져 있음
 - 해당 수입 품목의 수입 규제/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규제 품목일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2)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 취득
 -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필리핀 국세국의 고객등록 시스템 (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 CPRS)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수입면허(CAS)를 우선적으로 취득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면허(CAS)의 취득은 현지 업체 및 브로커를 통해 진행이 됨
- 3) 위생증명서 발급
 - 가공식품은 필리핀 세관의 성분 및 제조시설에 관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자는 수출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여부 확인
 -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함

수입 신고

1) 단일 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통한 신고

수입자는 필리핀의 통관 관련 정부 부처가 연계된 단일 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 사이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실시하고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 시스템에 수입화물 정보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현장에 접수하여 세관에 수입 통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됨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는 수입자, 화물인수자(consignee), 어음 소유자(holder of the bill)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은 개인 또는 회사, 기업의 책임자 또는 허가를 받은 통관 대행업자(customs broker)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수입면허(CAS)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화물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및 품목별 인증(필요 시)
- 수입신고서
- 위생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수입통관 시 필수 제출 서류 이외에도 공공보건, 안전, 국가안보, 국제 협약 준수 및 지역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식품류의 경우 동물성 제품과 식물성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함

동물 제품

- 수의학 증명서
- 멸종 위기종에 대한 CITES수입 허가
- 제품 등록증(CPR)

식물 및 식물제품

- 식물 및 식물제품 수입 허가증
- 식물 및 식물제품에서 파생된 형태 또는 GMO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AO2002에 따라 허가 통제 대상임
- 식물위생증명서

심사 및 검사

수입될 물품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금지(Banned, Red lane), 검사 완화(Liberalized, Green lane), 관련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Regulated)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관세국(Bureau of Customs)은 심사 및 검사 절차 수행

Green Lane(GL)의 경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Super Green Lane(SGL)제도를 두어 검사 생략 및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RL의 경우 세관 공무원의 현물 검사가 이루어지며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물품의 서류와의 일치 여부, 라벨링 준수 여부 등 검사 절차 이행

구분	업체 분류기준	통관 진행방식
SGL	국가공인 우수인증 보유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GL	수입 이력이 준수한 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사후 관세청 회계 조사
YL	일반 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서류 심사 사후 관세청 회계 조사
RL	신규업체 / 수입 이력 불량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서류 및 실물 검사 사후 관세청 회계 조사

관세 납부
및
신고 수리

1) 세금, 관세 및 기타요금 부과

- 필리핀 세관은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Customs Inspection), 관세 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 평가(Appraisal) 등을 진행하며, 수입에 따르는 각종 세금, 관세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함
- 세관원은 모든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물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며, 송장, 선서진술서, 제조원 등의 보고서 등을 조사함

2) 과세가격 결정

필리핀의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초한 국내 인도 가격(FOB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 물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12%), 개별소비세(excise tax) 등이 부과됨. 개별소비세의 경우 주류와 담배 등이 해당됨

3) 관세 납부 확인 후 신고 수리

-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공인은행(AAB)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동 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필리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거래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함
- 세관원은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국내 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 등)나 관세의 납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함

4) 신속한 운송을 위한 현금 보증 요구

- 세관원은 검사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속하고 빠른 운송을 위해 현금 보증으로 국내 선하증권, 은행 지불 보증,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금·관세 등 기타 지불 요금의 100%임
- 현금 보증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세금, 관세, 다른 지불 요금 등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 운송이 보류됨
- 불법 수입 물품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적하비 등의 기타 부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물품 반출

수입 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혹은 납부 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함

제한 또는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항목이 확인되거나 혹은 확인될 필요가 없을 시 접수 직후 바로 통관함

02 인증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필수)

1. 개요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함. 모든 가공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에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를 취득한 수입업체만이 해당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필리핀에 식품을 수입,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 및 상품등록이 필수로 요구되며,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청에서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발급받은 후 수입업자는 상품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함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해당 물품의 수입 적합 여부는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 BIS)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함

2. 대상 품목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며 가공식품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함

1 유형(저위험)	2 유형(중·고위험)
<p>제빵, 알코올 성분이 없는 음료, 캔디, 제과, 코코아 관련 제품, 커피, 티 및 크림, 조미료, 소스, 젤라틴, 디저트, 낙농품, 드레싱, 밀가루, 수산물, 과일, 채소류 및 버섯류, 면류, 파스타, 견과류, 오일,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등</p>	<p>알코올 음료, 식품첨가제, 차류(허브), 생수, 유아 및 영아용 식품, 특수 식이요법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p>

3. 인증 절차

1. 기존 CFRR(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식품 규제 및 연구 센터) 사용자 계정이 없는 경우, 전자 등록 시스템(E-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FDA 사용자 계정을 발급
- ↓
2. 가공 식품 유형에 따라 FDA Circular No. 2020-003 (ANNEX D)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FDA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상품등록증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 ↓
3. 필리핀 식약청은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된 서류에 대해 사전평가(Pre-assessment) 진행
- ↓
4. 사전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문서의 제출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전송되며, FDA에 오프라인 납부 또는 BancNet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도록 지불이 게시됨
- ↓
5. 검토를 통해 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상품등록증(CPR)이 첨부된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발송됨

4. 제출 서류

(1) 상품등록증(CPR)

-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신청서
- 평가표(Assessment Slip)
- 제품 리스트
- 공증된 진술서(Affidavit of Undertaking)
- 라벨 다각도(최소 2개 측면)에서 촬영된 제품사진
- 대리점계약서 판매인증서 위촉장 견적송장 제조업체의 양해각서의 원본 스캔본
- 다음 서류 중 하나:
 - 제조자 GMP 인증서 혹은 동등한 서류, 유효한 위생증명서,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원산국에서 발행한 HACCP 인증서, 원산국에서 인증된 기관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원산국의 필리핀 영사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 필요 시 기술 혹은 영양연구 또는 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검사증명서 등 입증 서류
- 표준과 규제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2) 영업허가증(LTO)

- 통합신청서, 수수료 지급 증명서
- 업체 등록 증명서
 - 개인기업: 통상산업부(DTI)에 등록된 유효한 인증서
 - 법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유효등록증, 협력 회사의 경우 CAD 인증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인 시설의 공증된 임대계약서가 필요함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권리증서 사본이 필요함
- 제품목록(브랜드 이름 목록과 제품 식별번호)
- 제조업체의 위치와 관련된 자료

5. 소요 기간 및 취득 비용

- 필리핀 소재의 제조, 수입, 유통 거래 등에 종사하는 업체가 신청하며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위험 식품은 약 3~4주가 소요되고, 중·고위험은 등록에 약 3~6개월이 소요됨
- 저위험 식품은 2,500필리핀 페소, 중·고위험 식품은 3,000필리핀 페소, 식품보조제는 1만 5,000필리핀 페소를 지불해야 함

6. 인증 기관

- 기관명: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홈페이지: www.fda.gov.ph
- 전화번호: +632 8 857-1900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필수)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썬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위생관리체계임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²⁾에서 진행하며, 아래 절차 등은 동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함

HACCP은 크게 식품, 축산물, 사료공장 분야로 나뉘며, 식품에 식품 제조·가공업이 포함됨. EU는 공통 식품 위생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5조³⁾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모든 식품제조업체는 HACCP의 원칙에 따라 제품 및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haccp.or.kr/>

3) (EC) No. 852/2004 제 5조 HACC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4R0852-20210324>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3. 인증 절차⁴⁾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사본
- 영업신고필증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4)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5>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6. 의무 적용 대상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병과류 중 병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당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03 라벨링

필리핀은 2014년부터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Distributed in the Philippines’을 통해 식품 라벨링을 규제 중임



표 1

식품에 대한 필리핀 라벨링 규정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 -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문 번역이 필요함
		제품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해 표시해야 함 -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명이나 이름이 설정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함 - 소비자에게 혼동되지 않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소비자가 식품의 본질과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과 함께 포장 유형이나 제품의 형태에 관한 문구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음 - 제품명은 포장의 주 디스플레이에 대문자와 굵은 글자로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함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상표(명)가 있다면 등록된 것과 같은 상표(명)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시설에 등록된 상표명 또는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상표명 또는 상표를 해당 상표의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추가 가공을 할 경우 표시할 수 없음 - 사용된 브랜드명 또는 상표는 제품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 혼동 혹은 성격이나 본질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 동일 제품 분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미 등록된 상표명 또는 AO No. 2005-0016 AO No. 2005-0016에 근거한 공적 도덕에 어긋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명과 같은 브랜드 이름은 허용되지 않음
		순 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내용물은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혹은 정보패널에 미터법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기재되어야 함 -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함. 단, 해당 식품을 번호별로 판매할 때는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세부 사항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업체 이름과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제조업자, 재포장 업자, 포장 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함 - 포장된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사람 또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이름은 'Manufactured for' 또는 'Packed for'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원산지 국가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제조 일자,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일자, 유통기한은 일, 월, 년 순으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함 - 혼란을 피하고자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기재하며, 월은 문자로 기재해야 함(예: 01Jan12)
		로트(LOT) 식별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간 생산된 식품의 수량을 나타냄 - 외부 면적 10cm² 미만의 포장으로 판매되거나 즉각적인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로트 식별 번호는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식품 허가번호	필리핀 식약청에서 식품 허가로 부여받은 식품 허가번호를 포장 외관에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함
		표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된 정확한 정보가 단일 스티커로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함 - 수입 물품은 필리핀 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영어)로 표기해야 함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 물리적/화학적 구성 성분, 순 중량,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위반 시 5,000페소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됨 - FDA에서 허가한 기존의 라벨이 소진되거나 자주 변경되는 라벨링 규정으로 기존 라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된 임시 라벨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스티커의 사용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된 농산물의 경우, 영양과 관련된 표시가 면제됨 - 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그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으로 미국의 식품 라벨링 기준이 필리핀에서 넓게 인정되며 수용되고 있음

04 위생요건

식품 첨가물 규정

KATI에서 콜라겐의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총 29건의 물질과 관련 기준이 검색됨

- 자세한 필리핀 식품 첨가물 규정은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에 접속하여 '식품 첨가물/유해물질 > 필리핀 > 식품 유형 > 기타 식품류 > 기타 가공품'을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29개의 관련 기준 모두 단백질 제품에만 해당되며, 딸기 콜라겐에 해당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유해물질 규정

KATI에서 콜라겐의 유해물질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총 0건의 물질과 관련 기준이 검색됨

- 자세한 필리핀 유해물질 규정은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에 접속하여 '식품 첨가물/유해물질 > 필리핀 > 식품 유형 > 기타 식품류 > 기타 가공품'을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V

시사점



01

수출 확대 방안

콜라겐은 전통적인 피부 미용 관련 시장

필리핀의 피부 미용 및 이와 관련된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므로, 콜라겐을 함유한 조사 대상 품목의 시장 가능성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수출 가능성 진단 및 전략

국내의 경우에도 콜라겐 제품은 주로 미용, 즉 피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며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동안이며 피부가 좋은 여배우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있음. 가능하면 필리핀에서도 미와 피부 탄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입소문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따라서 제품에 대한 모니터 요원, 블로거,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의 구매 경험 및 후기 공유가 제품의 시장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임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SNS 마케팅 필요

드라마와 K-Pop에 대한 인기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필리핀의 경우 한류의 아이콘으로 상징되어지는 BTS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K-뷰티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한류 아이돌 혹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마케팅 한다면 효과적인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음
- 또한 직관적으로 한국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징에 한국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문헌



1. Statista
2. ITC
3. Euromonitor International Passport
4. D&B Hoover's
5.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일자 2022. 12

-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문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